

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

1. 개정이유

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규제외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, 기술기준에서 인용된 표준의 개정사항을 반영

2. 주요내용

가. 「철도용품 기술기준」 Part 1 총칙의 7.항 재검토기한의 시행기준 연도를 2022년으로 개정하고, 8.항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신설

나. 「철도용품 기술기준」 Part 4 궤도용품에서 인용하고 있는 표준인 KRS TR 0001(레일)이 KS R 9106(레일)로 통합됨에 따라 인용된 표준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철도안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행정예고 : 2022. 5. 19. ~ 2022. 6. 8.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2-636호

「철도용품 기술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367호, 2020.5.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2일

국토교통부장관

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

철도차량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Part 1 총칙의 7.항 중 “2020년 7월 1일”을 “2022년 1월 1일”로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하며, 8.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‘ 8. 규제의 재검토
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’

Part 4 궤도용품 1. 보통레일의 4.1 1) 의 “KRS TR 0001”은 “KS R 9106”으로 하고, 4.2 2)의 “KRS TR 0001의 3.1 및 3.4”는 “KS R 9106의 5 및 8”로 한다.

Part 4 궤도용품 2. 접촉절연레일의 4.1 1) 의 “KRS TR 0001”은 “KS R 9106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□ Part 1 총칙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7. 재검토기한</p> <p>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0년 7월 1일</u>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6월 30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<신 설></p> | <p>7. 재검토기한</p> <p>국토교통부장관은 ----- ----- ----- <u>2022년 1월 1일</u> ----- ----- <u>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8. <u>규제의 재검토</u></p> <p>국토교통부장관은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<u>2022년 1월 1일</u>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<u>12월 31일</u>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|

□ Part 4 궤도용품 : 보통레일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-|
| <p>4.1 일반사항</p> <p>1) 레일의 형상 및 치수, 제조 및 가공, 시험방법 등은 <u>KRS TR 0001</u>에 준한다.</p> | <p>4.1 일반사항</p> <p>1) ----- ----- <u>KS R 9106</u> ----- -----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4.2 재질 및 강도 1) (생략) 2) 레일의 재료, 성능 등은 <u>KRS TR 0001</u> 의 3.1 및 3.4에 따른다. | 4.2 재질 및 강도 1) (현행과 같음) 2) ----- <u>KS R 9106</u> 의 5 및 8-----. |

□ Part 4 궤도용품 : 접착절연레일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4.1 일반사항 1) 접착절연레일 제작에 사용되는 레일은 <u>KRS TR 0001</u> 에 준한다. | 4.1 일반사항 1) ----- ----- <u>KS R 9106</u> -----. |